

지방회계법 제정의 의의와 주요 내용

강인재(재정공학연구소)·정성호(강원대)

I. 서론

◇ 제도적 측면에서 성공적인 도입: 2007년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재정관리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됨. 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궁극적으로는 사업별 원가정보를 산출하고, 비용을 관리하도록 하여 사업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는 토대가 구축됨.

◇ 실무에서는 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과 업무 부담이 문제가 되며, 특히 정책결정자들의 새로운 재무회계제도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의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효과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 이는 재무회계의 재정정보가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련인(정책결정자, 지방의회, 주민, 언론, 시민단체, 전문가 등등)에게 유용한 재정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임.

◇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재정정보의 활용주체로 외부이용자와 내부이용자가 있는데 외부이용자로는 주민, 지방의회의원, 언론, 외부투자가, 시민단체 등이 대표적이며, 내부이용자로는 정책결정자와 공무원이 있음. 지방의원들은 예산심의 및 결산승인이라는 제도적인 틀 속에서 주로 예산회계정보를 활용하는데 비해 주민들은 대부분 수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재정보고서를 접하게 됨. 따라서 주로 결산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주민에 대한 재정공시방법의 개선은 당연히 계속 추진되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대한 관심은 지방세 등 주민이 부담하는 재원의 비중이 커져야 한다는 외부 환경적 요인이 크게 작용할 것임.

◇ 재정환경적 요인과는 별개로 사업예산과 성과평가, 결산정보간의 핵심 연계고리인 원가정보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회계관련법, 제도의 정비와 체계화가 요구되고 있음.¹⁾

◇ 예산과 회계의 통합적 운영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지방재정법과 별도의 지방회계법을 제정하는 것에 이론이 있을 수 있는데, 지방회계가 예산과 상이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과 회계 본래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회계정보의 산출과 정보 공시, 정보 활용을 위한 독자적 법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 즉, 예산과 구분되는 회계의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회계법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최근 재정관리의 추세인 재정운영의 통합적 운영에 역행하는 것은 아님.

◇ 본 연구는 지방회계법이 단순한 회계절차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닌 결산체제를 포함한 회계전반의 개혁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재정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음.

II. 지방자치단체 회계의 운영현황

1. 정부회계의 의의

◇ 자치단체 전체의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등의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재무회계 영역인 반면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개별 사업의 원가를 계산하는 것은 원가회계의 영역이나, 재정운영보고서를 순원가방식에 의해 작성하기 때문에 정부회계에 있어 재무회계와 원가회계의 차이는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음.

◇ 재무보고서가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재무건전성, 재정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개별 사업의 원가 정보는 개별 사업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이 됨. 세부조직별 또는 개별 사업별 원가회계는 이 정보를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공시하여 사업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목적과, 내부적으로 관리자가 원가정보를 의사결정에 활용하여 사업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후자의 경우, 관리회계라고도 하는데 원가회계는 넓은 의미로 사용될 때 관리회계 분야를 포함하고 있음.

◇ 예산과 회계는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1) 지방분권촉진법 제12조 2항에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 노력”에 관한 규정이 있었으나 2013년 지방분권 및 행정체제개편특별법으로 통합되면서 위 규정이 삭제됨

<표 1> 예산과 회계의 비교

	예 산	회 계
성 격	미래의 계획	실적: 과거의 기록
가치관련성	가치배분	가치 중립성
정치적 성격	포함	전문적 성격
목적	형평성과 효율성의 조화	신빙성있는 회계정보의 제공
기준	예산법규, 조정, 분석기법	회계기준의 적용

◇ 예산과 회계의 연계

- 대상 분류

예산회계: 재무자원, 채무

재무회계: 경제적 자원, 부채

* 예산과 결산서의 분류의 일관성

- 인식시점: 양자의 차이에 대한 조정

◇ 회계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 예산집행인 회계기록의 적정성: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의 적용

- 신뢰할 수 있는 결산서 작성²⁾

- 회계정보의 활용 제고: 결산서의 예산과정에서의 환류

2)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30조(결산서의 작성) ①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은 세정업무 담당과장이,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은 회계업무과장이 작성한다. ②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의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자료를 작성하여 매년도 5월 19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결산서는 [영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작성한다. ④ 시·도지사는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0조의1(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1조(결산설명자료 제출) 각 실·과장, 시·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은 결산에 대한 설명자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세출에 관한 사항은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방회계제도 운영현황

1) 조직

(1) 안전행정부 조직 및 인력
재정관리과 회계결산담당 2명

(2) 지방회계기준위원회

◇ 2007년 전지방자치단체에 복식부기·발생주의회계가 도입된 후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심의위원회(이하 ‘지방정부 회계기준위원회’라고 칭함)가 2007년 8월에 임기 만료된 이후에 2년 동안 재설치 되지 않아 중요 회계 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제약이 있음. 아울러 지방회계전문기관이 없음

(3) 지방자치단체

◇ 광역시도의 경우 2012년 대구광역시 복식부기팀 마저 없어져 현재 계수준에서 복식부기회계업무를 처리하는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없는데 경기도는 복식부기팀이 없어졌다가 2012년 3월 다시 조직되어 현재 4명이 업무를 보고 있음. 17개 자치단체중 경기도를 제외한 12개 자치단체는 조직 축소, 4개 자치단체는 현상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복식부기관련 업무가 회계과에 속한 경우는 9곳, 회계계약심사과 2곳, 새마을회계과 1곳, 회계재산담당관실 1곳, 재무과 1곳, 총무과 1곳임.

◇ 시·군의 경우도 복식부기회계가 도입된 후 한시적으로 운영된 복식부기팀이 해체되어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1명이 복식부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들도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업무의 특성으로 인해 타부서로의 전직을 원하고 있음.

예산부서와 회계부서의 지방재정운영 관련 주요 기능 비교

예산부서: 중기재정계획, 투융자심사관리, 예산편성, 예산관리, 보조금관리, 교부금관리, 기금, 지출원인행위, 예산결산, 재정분석

회계부서: 대금지급, 지출결의, 지금명령, 예산결산, 재무결산(복식부기팀)

2) 전문성 제약

- 회계지식을 가진 공무원 부족과 순환보직으로 인한 장기 근무의 제약

3) 이호조의 연계 부족

◇ 매년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사항 반영 및 사용자 의견수렴을 통해 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방회계제도와의 정합성 제도를 통한 유용성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 시계의 통합적·체계적 과제 도출 필요

* 연도별 기능개선 점증: 2009년:212건, 2010년:476건, 2011년:570건, 2012년:810건

◇ 운영 6년차로 축적된 DB 용량초과 및 시스템 노후화(6~8년) 등에 따른 지방재정관련 정보화 인프라의 교체 및 확충 필요

4)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과의 통일된 회계기준의 미비

5) 자치단체장 등 정책결정자의 활용 미비: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회계책임관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장치 마련

◇ 통합부채의 개념과 범위: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중 직영기업포함) + 지방공사·공단 + 출자·출연기관(제3섹터 포함)

* 지방자치단체 부채= 채무(현금주의) + 발생주의부채(장기미지급금, 선수금, 퇴직급여충당부채, 보증금·보관금 등, 보조금집행잔액, 학교용지부담금 등)

◇ 사업원가: 2010년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이 제정되었으며, 2012년에는 전자치단체가 순원가방식에 의한 재정운영보고서 작성함.

* 축제·행사원가의 도출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 원래 적자를 보는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뜻하는 것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해 지원하는 경우 지방정부가 연성예산제약 하에 있으면 그 지방정부는 자신이 공급하는 지방공공서비스의 비용을 전부 인식하지 못한다. 따라서 지방공공서비스의 한계편익이 한계비용을 초과하게 되고, 그 결과 과잉지출이 생기게 된다(Breuille & Vignealt, 2010).³⁾

3) identifies a potential problem with decentralization at a time when its virtues are widely extolled. We show that responsibility for

외국의 경우를 보면 주민의 부담이 커짐에 따라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대한 이해관계가 증대하고 이 과정에서 주민참여의 확대와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재정정보의 유용성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예산과 회계와의 연계 미흡: 동일한 예산운영에 대해 서로 상이한 재정정보가 생성되어 재정정보의 공개와 투명성 확보에 어려움, 이러한 원인은 양자의 분류체계, 분류수준, 적용범위, 인식 시점이 상이한 것을 조정할 수 있는 기제가 부족한 점에서 찾을 수 있음.

결산체제의 미비

3.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 예산회계에서는 결산을 당초에 편성된 예산의 집행결과를 확정하는 의미, 즉 예산집행의 법적책임을 해제하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데 반해 재무회계에서는 지역주민, 지방의회, 중앙정부 등 정부이용자에게 재정운영결과를 보고한다는 재정정보의 제공과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음.

<표 2> 예산회계결산과 재무회계결산의 비교

	예산회계결산	재무회계결산
인식기준	현금변동시점에 인식하는 현금주의	거래발생 시점에 인식하는 발생주의
회계범위	재무재원(수입, 지출)	경제적 자원(비용, 수익, 자산, 부채)
회계처리대상	세입·세출관련 예산거래	예산거래 및 비예산거래
결산서류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재무제표,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등
출납폐쇄기한	설정 필요	불필요

◇ 지방재정법 결산 규정은 예산회계의 결산과 재무회계의 결산을 별도의 조문으

equalization at multi-levels within a decentralized federation creates an overlapping equalization policy that can worsen fiscal discipline.

로 규정하고 있다. 제51조에서는 예산회계의 결산을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는데 세입은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을 세출은 세출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사용액, 전용 등 증감액,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지출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 불용액이 이에 해당됨.

◇ 제53조 재무회계의 결산규정은 다음과 같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에 결산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재무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와 같이 예산회계결산과 재무회계결산을 별도로 규정함에 따라 결산서류, 시기, 결산검사 등에서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예산회계결산서에 대한 결산검사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 간에 불가피하게 중복사항이 발생하게 되며, 결산검사의 전문성 미흡 등과 결산총평의 경우에는 같은 재정집행을 표현을 달리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 특히 복식부기 재무보고서는 세입세출결산서의 첨부서류 성격에 그쳐 결산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결산서류로서의 제약이 있으며, 지방의회,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함.

III. 국가회계법의 운용

◇ 국가회계법의 제정: 2007년 국가회계법을 제정하고 2009년 7월 국가회계법에 의해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가 설치되고, 2010년 국가회계기준센터 설립되었으며, 기획재정부 회계관련 조직의 보강이 이루어지고, Dbrain의 개선이 이루어짐.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79명): 7개과 2팀으로 구성

- 성과관리심의관, 재정관리총괄과(15명): 재정집행관리팀(8명), 재정제도과(8명), 성과관리과(9명), 타당성심사과(7명), 민간투자정책과(10명), 재정정보과(8명), 회계

결산과(7명): 과장, 사무관(3), 주무관(3): 회계결산, 성인지결산, 결산관련법령검토, 회계결산업무, 결산업무

- 재무회계팀(5명): 팀장, 사무관(3), 주무관(1): 국가회계제도, 국가회계법, 국가회계센터관리업무, 재무결산

<표 3> 국가회계법의 주요 규정

국 국 가	국 가	지 방
국가회계법 (’07.10월 제정 → ’08.1월 전면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회계 사무의 관장 √ 회계책임관 지정 √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 다른 법률 우선 적용 원칙 √ 회계처리원칙(발생·복식부기) √ 회계기준업무의 위탁 √ 결산보고서 작성주체 √ 결산보고서 구성(개요, 세입·세출,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작성기준 √ 결산보고서 부속서류 명세 √ 회계장부 비치, 감독, 교육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없음 √ 별도 없음 √ 별도 없음 √ 별도 없음 √ 지방재정법 §53①* √ 별도 없음 √ 지방재정법 §53① √ 지방재정법시행령 §62①**, 지자체회계기준 규칙 √ 지자체 회계기준 규칙 √ 별도 없음
국가재정법 (’07. 1월 제정 → ’08.1월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산보고서 제출 절차 등 ※ 결산보고서 작성관련 사항은 국가회계법으로 이관(’0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법 §134 및 동법 시행령 §82 ~ 84
<p>주: ’07년 국가회계법 제정 당시부터 결산(세입·세출, 재무, 기금) 법령이 분산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09.1월부터 회계·결산의 내용은 국가회계법에 규정하고, 절차는 국가재정법으로 일원화하는 현행 법령체계 확립됨</p>		

<표 4>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조직비교

구분	국 가	지 방	
		현행	개선
정책부서	기재부회계결산과(7명) 및 재무회계팀(5명) 등 총 12명	안행부 재정관리과: 회계결산 담당 2명	회계결산 전담과 또는 팀으로 설치 (2명→7명)
지원기관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조세재정연) 2부(평가기준/재무통계) 1팀 23명	별도 조직 없음	지방회계재정통계센터

--	--	--	--

◇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한국조세재정연구원) 체계
2부(평가·기준, 재무통계) 1팀 23명

IV. 지방회계법의 주요 내용

◇ 국가회계법과 같이 지방회계법이 단순한 회계절차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산체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회계전반의 개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재정관리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함.

1. 지방회계법의 기본 내용

◇ 국가회계법을 준용한 지방재정법의 기본 내용은 <표 5>와 같음.

<표 5> 지방회계법의 기본 내용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	지방회계법 제정안
< 지방재정법 > • (결산의 원칙) 「지방회계법」에 따라 결산을 수행 • (결산보고서 작성·제출) 지자체장은 매년 「지방회계법」에 따라 결산서 작성,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 승인 * 지방자치법 §134 : 출납폐쇄 80일 이내에 결산서 작성 → 지방의회 승인 → 5일 이내에 상급기관 보고 → 고시 < 지자체 기금관리기본법 > • (기금 결산) 「지방회계법」에 따라 결산보고서 작성, 세입·세출 결산서와 함께 의회 제출 및 의결	• 지방회계 사무의 관장 • 회계책임관 지정 • 지방회계제도심의위원회 • 다른 법률 우선 적용 원칙 • 회계처리원칙(발생·복식부기) • 회계기준업무의 위탁 • 결산보고서의 작성 주체 • 결산보고서 구성(개요, 세입·세출,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 결산보고서 부속서류 • 회계장부 비치, 감독, 교육 등
※ 지방재정법, 지자체 기금관리기본법은 지방회계법 부칙으로 개정	

◇ 결산체제의 개편으로 국가와 같이 예산회계결산서와 재무결산서를 일원화하고

성과보고서를 별도로 제시하며, 첨부서류를 정비.

2. 지방회계법의 주요 내용

국가회계법과 차별화되는 지방회계법의 주요 내용은 <표 6>과 같음.

<표 6> 지방회계법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MD&A	결산총평으로 총괄적인 내용의 제시
회계제도 연계	자치단체 회계제도의 연계(공기업, 출자출연기관 포함)
조직확충	결산담당 조직확충, 지방회계제도 심의위원회, 지방회계재정통계센터 설립, 지자체회계담당부서 확충
전문성 제고	회계책임관의 신설: 실질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관련 규정의 명시화: 회계담당공무원의 자격증 취득과 CPA 특별채용
재무보고서 신뢰성	재무보고서 작성주체인 자치단체장과 회계책임관의 법적책임성 규정: 재무보고서의 내용 오류 및 재정공시에 관한 제반사항, 결산감사의 제도화
회계정보 활용	성과보고서: 사업원가와 성과와의 연계(통합사업관리) 회계정보 활용에 대한 평가 및 인센티브 적용: 재정분석과 유사한 평가시스템 도입
e호조 시스템	통합사업관리가 가능한 사업관리시스템 구축, 자치단체 Cost Center와 사업관리시스템의 연계, 보조금(시도비 보조금, 민간보조금 포함)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방안

◇ 결산총평: 관리자의 개요설명 및 분석(Management's Discussion & Analysis, MD&A). MD&A는 필수적인 보충조서(RSI)의 일종으로 재무제표의 앞에 나오며, 현재에 알려진 사실(감사보고서 일자기준), 의사결정 및 조건을 기초로 한 정부의 재무활동을 객관적이고 읽기 쉽게 분석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임. MD&A는 관리자에게 정부활동에 대한 단기 및 장기적 분석을 설명하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MD&A는 전년도와 대비하여 당해 연도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하여 당해 연도를 중심으로 논하는 것이며 차트나 그래프 및 각종 도표의 사용이 권장되고 있음. MD&A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해가 쉽다는 것으로 회계에 지식이 없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작성된다는 것이며, 또한 관리자들이 작성에 참여함으로써 1) 순

자산, 순자산의 변화, 펀드밸런스 등 정부의 재정상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2) 정책결정자들이 해당정부의 경제적 기반이 어떠한가를 평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Wilson & Kattelus, 2001).

MD&A는 다음과 같은 회계실체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FASAB, 1999).

- 임무와 조직구조
- 성과목적, 목표와 결과
- 재무제표
- 시스템, 통제 및 법규 준수

◇ 회계관련조직의 보강: 전문가 인프라의 구축이 가능한 지방자치단체 회계조직의 강화와 국가회계기준센터와 유사한 지방회계재정통계센터의 설립. 예산집행을 단순히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에 의해 기록하여 재정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정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재정정보를 생성하면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회계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복식부기조직에서는 타 업무와 같이 재무회계, 원가회계를 다루고 있는데 특히 원가관리는 복식부기 담당자나 복식부기 팀만이 예산부서나 다른 사업부서에서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음. 회계부서의 경우 재무회계결산, 원가준칙 적용, 재정통계, 자산변동회계처리, 복식부기교육 등을 주로 처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재무회계결산 및 원가분석을 체계화하는 것은 물론 단식부기에 의한 예산회계결산도 동시에 수행하며, 주요 사업에 대한 사업원가와 사업성과를 연계하는 조직으로 발전하여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예비타당성, 사업모니터링을 담당하여야 할 것임.

◇ 전문성 제고: 복식부기 담당자에게 관련 자격증 취득을 의무화하고 자치단체별로 최소 1명의 공인회계사를 개방형으로 채용하던지,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광역자치단체별로 공인회계사를 채용하여 기초자치단체 회계업무를 보조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에 따라 회계 담당공무원의 업무책임성 증가 및 추가적인 업무부담에 상응한 인센티브를 제공 필요.

The Certified Government Financial Manager(CGFM) "The Mark of Excellence in Federal, State and Local Government"⁴⁾

4) CGFM is a professional certification recognizing the unique skills and special knowledge required of today's government financial managers. It covers governmental accounting, auditing, financial reporting, internal controls and budgeting at the federal,

◇ 이호조시스템의 개선

- 수입, 지출, 자산, 부채를 포함하는 사업관리시스템 구축
- 자치단체 Cost Center와 사업관리시스템의 연계
- 보조금(시도비 보조금, 민간보조금 포함)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방안

◇ 내부통제의 강화:

- 자치단체에서 작성한 재무제표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한 자체 검증기능이 상대

state and local levels(www.agacgfm.org). 학사학위, 24학점 이상의 회계, 감사, 예산, 경제학, 데이터프로세싱, 재무관리, 정보자원관리, 행정학, 기타 재무관리 및 관련된 주제로 구성된 세과목 시험.

Examination 1: Governmental Environment 정부환경

- Organization, Structure and Authority of Government(15%) 부 조직, 구조 및 권한
- Legal and Other Aspects of the Government Environment(25%) 정부를 규율하는 법 및 여타 환경적 요인
- Demonstrate an understanding of the Government Management System including the Interrelationships among 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Operations, Accounting, Reporting, and Auditing(15%). 기획, 프로그래밍, 예산, 운영, 회계 보고 및 감사간의 상호관계를 포함한 정부관리시스템의 이해
- Governmental Financing Process(25%). 정부재무과정
- Identify the concepts, definitions, and notions of Public Accountability including(5%) 공공책임성의 개념, 정의
- Demonstrate an understanding of the role of Ethics in Government, and Ethical Practice as a Government Financial Manager including(5%). 정부 윤리의 역할, 정부재무관리자로서의 윤리 실제
- Demonstrate an understanding of Financial Management Responsibilities and Skills including(10%). 재무관리자의 책임성과 기술의 이해

Examination 2: Governmental Accounting, Financial Reporting and Budgeting 정부회계, 재무보고 및 예산

- Governmental Financial Accounting, Reporting and Budgeting: General Knowledge (40%)
- Demonstrate an understanding of State and Local Financial Accounting and Reporting including(30%) 주 및 지방정부 재무회계 및 보고의 이해
- Demonstrate an understanding of Federal Financial Accounting and Reporting including(30%) 연방정부 재무회계 및 보고의 이해

Examination 3: Governmental Financial Management and Control 정부재무관리와 통제

- Internal Controls(25%) 내부통제
- Internal and External Auditing(25%) 내부감사와 외부감사
- Demonstrate an understanding of Performance Measurement Reporting including: (13%) 성과측정보고의 이해
- Demonstrate an understanding of Financial and Managerial Analysis Techniques including(7%) 재무 및 관리분석기법의 이해
- Financial and Managerial Concepts, Controls and Techniques(30%) 재무 및 관리 개념, 통제와 기법

적으로 부족한 점을 고려할 때 공인회계사 등 민간전문가를 통한 재무제표에 대한 검증제도의 도입은 물론 감사원의 관여로 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

◇ 감사

- 영국 독립된 감사위원회(Audit Commission); 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재무보고에 대한 감사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감사 기준에 따라 기술과 전문성을 확보한 회계법인이 지방감사위원회의 위임을 감사 감사를 수행

- 미국 기본재무제표에 대한 외부 감사

- 일본 1998년도에 지방자치단체의 외부감사제도를 도입

* 예산회계 결산에 의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 제출과 재무회계결산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 제출을 통합하여 단일화(이효·이삼주, 156)하고 단기적으로 결산감사의 강화와 장기적으로는 외부감사나 영국, 프랑스와 같은 지방회계원의 설립.⁵⁾

◇ 자치단체장 등 정책결정자들의 회계정보활용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 통합사업관리: 사업의 성과분석과 사업환류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은 현재 자치단체에서 운용중인 이호조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사업원가와 사업의 성과를 연계하여 자치단체장 등 관리자들이 사업을 용이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치라 할 수 있음.

◇ 공시방법의 개선: 주민참여의 확대

V. 결론

◇ 지방회계법은 예산, 회계, 성과, 계약을 연계하는 통합사업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법기술적인 측면에서 지방회계제도 운영의 신축성 부여

◇ 회계조직과 회계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지방회계의 특성 부각.

5) 감사인의 선임, 감사대상, 감사의 범위(작성지도의 포함 여부 등), 감사보수의 결정 등이 주요한 내용이 된다.

<표 7> 지방회계법 제정의 당위성 요약

구분	내용	대안
예산과 회계의 성격차이 부각	예산: 정치적, 회계: 가치중립적	- 지방회계법 분법: 책임성강화 - 조직확충 및 인력 전문성 제고
정부회계의 중요성 인식	회계중요성의 인식미흡으로 조직축소	
법 기술적문제	급변하는 회계환경에 대응 제한	

<참고문헌>

강인재(2003).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개혁: Statement No. 34의 시사점. 한국정부회계학회. 「정부회계연구」 제1권 103-118.

강인재(2012). 통합사업관리를 통한 재정사업의 성과제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재정」 제3호. 50-63.

이효(2013). 지방자치단체 결산체계의 개편방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재정」 제11호. 56-73.

이효·이삼주(2007). 사업별 예산과 복식부기제도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제도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2007-11(제406권).

황국재·윤재원(2008).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도입방안, 한국정부회계학회. 「정부회계연구」 제6권 제1호. 3-36.

Breuille, Marie-Laure & Marianne Vigneult(2010). Overlapping soft budget constraints. *Journal of Economics*. Vol. 67, No.3 . 259-269.

Federal Accounting Standards Advisory Board(1999). *MANAGEMENT'S DISCUSSION AND ANALYSIS*. Statement of Recommended Accounting Standards Number 15.

Wilson, Earl R. & Susan C. Kattelus. 2001. Implications of GASB's New Reporting Model for Municipal Bond Analysis and Managers. *Public Budgeting & Finance*. Vol. 21. No.3.